

**기본방역수칙 주요 내용**

○ **(주요내용)** 현행 4개 기본수칙을 개편(안)에서 **7개로 강화**

현행 기본수칙	기본방역수칙
마스크 착용 의무	마스크 착용 의무
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	출입자명부 관리
출입자명부 관리	주기적 소독 및 환기
주기적 소독 및 환기	음식 섭취 금지
	증상확인 및 출입제한
	방역관리자 지정·운영
	방역수칙·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

- **(마스크 착용)** (기존)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구분  
→ (수정) 실내 다중이용시설·사업장 등에서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**상시 마스크 착용**하고, **마스크 벗는 행동은 금지**
- **(출입자명부관리)** (기존) 유흥시설\* 중심으로 전자출입명부 의무화, 그 외 시설은 출입자명부 작성 → (수정) 모든 다중이용시설 출입자\*\*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등 출입자명부 작성  
\* △유흥시설(유흥주점·단란주점·감성주점·헌팅포차), △콜라텍, △홀덤펍은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 
\*\* (현재) 모든 출입자는 명부 작성하도록 되어있으나, 실제 준수는 미흡 → (수정) 모든 출입자 명부 작성 의무화
- **(소독·환기 강화)** (기존) 유흥시설 등 중점관리시설 중심으로 소독·환기 의무화  
→(수정) 모든 다중이용시설·사업장에 주기적 환기와 소독 의무화
- **(음식섭취금지)** (기존) 실내체육시설 등 일반관리시설 2단계부터 적용된 음식섭취 금지  
→ (수정) **음식섭취 목적의 시설(식당·카페 등), 음식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음식섭취 금지**  
\* 현행 수도권(2단계) 14종, 비수도권(1.5단계)에서 실내스포츠시설 등 8개 시설에서 음식섭취 금지
- **(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)** 다중이용시설·사업장의 **모든 이용자·종사자**에 대해 **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** 추가 권고
- **(방역관리자 지정·운영)** (기존) 중점관리시설 중심의 방역관리자 지정·운영  
→ (수정) 시설 및 사업장의 방역을 총괄하는 **방역관리자 지정, 종사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** 추가
- **(방역수칙·이용가능 인원 게시·안내)**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**실내 다중이용 시설 입구에 이용가능 인원을 게시 및 입장 안내**  
\* 유흥시설(5종), 홀덤펍,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, 노래연습장, 식당·카페, 실내체육시설, 목욕장, 오락실·멀티방, 전시회·박람회·국제회의, 경마·경륜·경정, 카지노, 종교시설